##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46

발의연월일: 2022. 2. 11.

발 의 자:조명희·홍문표·김석기

성일종・이주환・조경태

박대수 · 양향자 · 추경호

김성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대학에 설치된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어 왔음.

최근 일반 대학의 학위과정에서도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가운데, 평생교육으로서 접근성이 뛰어난 사이버대학에 대해서 자율성을 확대 하고 전문학사학위과정 졸업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서도 학사학위로의 연계가 가능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9조).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전문대학을 졸업한"을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등"이라 한다)을 졸업한"으로, "전문대학에"를 "전문대학등에"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을	제49조(전공심화과정) 전문대학
<u>졸업한</u>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	및 원격대학 중 전문학사학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
에 따라 <u>전문대학에</u> 전공심화	(이하 이 조에서 "전문대학등"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라 한다)을 졸업한
	<u>전문대학등에</u>